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대) / 팩스: 723-50545
참보안하텔: PSPD, 나무누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간사: 문혜진: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검찰에 신한국당 경선의 금품수수 시비에 대한 수사촉구 서한 발송
날 짜 1997. 7. 15. (총 1 쪽)

7월 13일 참여연대 검찰에 수사촉구 서한 발송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는 신한국당의 경선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위법여부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결코 한 정당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고소가 없다해서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 수사 촉구서한은 다음의 별첨과 같습니다.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

<별 첨>

신한국당 경선의 금품수수 시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경선평정에서 또 다시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이라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퇴행적 정치행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박찬중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측이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살포하면서 경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통합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의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동법 제257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임이 명백합니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내부의 문제이므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순전한 내부의 문제는 해당 정당 자체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신한국당 내부의 징계기관등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와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가 단순히 한 정당의 내부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의 전초전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선거절차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그와같은 입장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가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친고죄도 아닌 본 사건에 있어서 결국 공권력의 직무유기요, 국민의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 1인당 100만원씩 60억이면 선거가 끝난다'는 설이 나돌고, 각종 향응제공의 흔적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 타락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어디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모범을 보여야 할 집권여당의 경선이 이런 식으로 과열, 혼탁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찬중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집권당 초유의 자유경선'이라는 것이 과연 추악한 금품시비로 얼룩진 경선을 의미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대의원을 사고 표를 사서 선거를 치룬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공적기관의 하나랄 수 있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면 의당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이같은 시비의 진위를 명백히 가림과 동시에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범죄행위가 있는 한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소임을 다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